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안

3. 안 건 요 지 : 따로붙임

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따로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1996년 6월 일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장 홍 진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안

검토보고서

1996. 6. .

산 업 건 설 위 원 회전 문 위 원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1996년 6월 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6월 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 정 이 유

○ 도시철도를 건설함에 있어 건설지역내의 사유지 지하부분 이용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건설되는 지하시설물을 다른 건축행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2. 주 요 골 자

- 가. 보상지역을 제반여건 감안, 고층 시가지, 중층 시가지, 저층 시가지, 공지·임지로 분류하고 층별 효용비율과 입체 이용률등을 고려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였고
- 나. 지하시설물 보호에 따른 최소 여유폭은 시설물 양측의 경우 0.5m, 시설물 상하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각각 6m 또는 0.5m로 하였으며
- 다. 토지의 통상적 이용행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 한계 심도는 고층 시가지는 40m, 중층 시가지는 35m, 저층 시가지 및 주택지는 30m, 농지·임지는 20m로 하였음.
- 라. 지하보상비의 산정 및 지급은 도시철도법에 의거 산정하되 감정 평가 법인에게 의뢰하여 평가토록 하였으며

마. 지하시설물로 인하여 보상완료된 토지는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물을 보호하고 시설물 폭의 2배 이내에서의 건축행위 등은 사 전협의를 하도록 함.

3. 검토의견

본 안건은 도시철도를 건설함에 있어 건설지역내 사유지의 지하부분 이용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보상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하시설물을 다른 건축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라

생각되며, 아울러 한계심도 초과시(200m이내)의 보상과 최소보상비를 타 시·도와 비교 일부 현실화한 것은 합리적인 사항으로 판단됨.